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과 농업법인 관련 법제 개선 방향*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117-3)

국문요약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고 농업 부문에서 협동조합 법인들이 활발하게 설립되고 있다. 이들 '농업 분야 협동조합'은 법률적 의미의 농업법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협업적 농업을 추구한다는 점과 1인 1표제로 대표되는 민주적 의사결정의 원칙을 따른다는 점에서, '농업 분야 협동조합'과 농업법인의 일종인 영농조합법인의 기원, 조직 구성 및 운영의 원리, 조직의 목적 등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부분이 많다. 그럼에도 '농업 분야 협동조합'이 농업법인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법률적 형평성 문제가 여럿 제기될 수 있다. 두 유형의 법인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문제를 '농지 소유 및 이용에 관한 권리', '조세 감면 조치의 대상', '농업 정책의 대상 자격 및 규제 특례'라는 세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농업 분야 협동조합' 법인을 농업법인의 일종으로 간주하여 형평성 문제를 완화하는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수십 종의 관련 법률과 그 하위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지침 등을 개정해야 한다.

주요어: 협동조합기본법, 협동조합,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 이 글은 2013년에 수행한 연구 『농촌 지역의 협동조합 설립 동향과 제도 개선 과제』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보완한 것이다.

** 교신저자(김정섭) 전화: 02-3299-4252; email: jskkjs@krei.re.kr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117-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 서론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은 협동조합의 사업 분야를 전면적으로 개방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김정섭, 2013: 174).¹⁾ 여러 경제활동 부문에서 협동조합들이 설립되고 있다. 농업 부문도 예외가 아니다. 2014년 1월 24일을 기준으로, 설립 신고가 수리된²⁾ 일반 협동조합³⁾ 3,453개 가운데 '농업, 어업 및 임업' 부문 일반 협동조합은 388개다. 그 비율이 11.2%에 달한다.⁴⁾ 그 가운데 다수가 '농업 분야 협동조합'⁵⁾이다.

- 1) 『협동조합기본법』에서 '금융 및 보험업' 분야의 협동조합 설립은 허용되지 않았다. 단, 사회적 협동조합이 주 사업 이외의 사업으로서 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을 하는 것은 허용되었다.
- 2) 사회적 협동조합은 인가제로, 일반 협동조합은 신고제로 운영된다. 그런데 설립 신고가 수리되는 것만으로 일반 협동조합이 설립되는 것은 아니다. 신고 수리 이후 법원에 공시(등기)되어야 설립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사회적 협동조합도 인가 후에 공시(등기)되어야 설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 등기부 등본을 낱낱이 살펴서 협동조합 현황을 파악하기가 어려워, 이 글에서는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홈페이지(www.cooperatives.go.kr)에 '협동조합 통계'로 제시되는 신고(또는 신청) 및 수리(또는 인가) 관련 자료를 활용한다.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나오는 설립 신고가 수리된 협동조합들에 관한 자료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www.iros.go.kr)에서 제공하는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얻은 농촌 지역, 즉 읍부(邑部)와 면부(面部)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협동조합 법인의 등기부등본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설립 신고가 수리된 농촌 지역의 협동조합들 가운데 법인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5~10% 정도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을 얻었다.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게 다루어야 할 수준의 차이지만, 이 글의 논지상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의 협동조합 관련 통계를 인용한다.
- 3) '일반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상의 표현이 아니다. 『협동조합기본법』에는 '일반'이라는 꾸밈말이 나오지 않지만, 통상 '사회적 협동조합'과 구별하려는 목적에서 '일반 협동조합'이라는 용어가 쓰이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협동조합', '일반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일반 협동조합 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 등의 표현을 취할 것이다. 다른 꾸밈말 없이 '협동조합'이라고 쓰는 경우는 『협동조합기본법』상의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을 아우르는 것이다. 『협동조합기본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의해 규제되는 농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을 포함하여 '협동조합'이라는 용어를 쓸 경우에는, 그러한 취지임을 부가하여 설명할 것이다.
- 4)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홈페이지를 참고.

‘농업 분야 협동조합’과 영농조합법인은 협업적 농업 경영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목적을 갖는 조직이다. 게다가 법률에 규정된 법인 구성 요건이나 의사결정 원칙 등에서도 동일한 부분이 많다. 그런데 영농조합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농업법인’으로 그리고 ‘농업경영체’라고 정의되지만,⁶⁾ ‘농업 분야 협동조합’은 그렇지 않다. 법률상의 영농조합법인에, 또는 농업법인에, 또는 농업경영체에 농지를 소유·임차할 권리를 부여하거나, 조세를 감면해 주거나, 규제 특례를 적용하거나, 정책 지원 대상의 자격을 부여하는 법령들과 정책 사업 지침들이 많다. 그런데 ‘농업 분야 협동조합’은 농업법인으로도 농업경영체로도 간주되지 않는다. 달리 말하자면, 목적과 기능이 아주 비슷한 두 종류 법인의 법률적 지위가 다르다.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되는 협동조합들이 ‘현재 다른 법령을 근거로 활동하고 있는 다른 법인과 동등하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제 안정과 사회통합 기능 등의 입법 취지를 구현하는데 필수적인 입법적 조치’라는 주장이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전후(前後)에 제기된 바 있다(강현철·박광동·차현숙·김종천·류창호, 2012: 85; 기획재정부, 2012: 1).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타 법령 개정에 관한 논의를 제기한 것으로는 강현철 외(2012)의 연구가 거의 유일하다. 그 연구는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된

5)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가운데 농업인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하고 ‘농업경영’을 영위하는 협동조합을, 이 글에서는 잠정적으로 ‘농업 분야 협동조합’이라고 칭한다. 이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규제되는 ‘농업협동조합’과 구별하기 위함이다.

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2호에는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라고, 동법 제2조 제3호에는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다.

상황에서 병행 개정해야 할 법률들을 광범위하게 논의하였다. 이 글의 주제인 '농업 분야 협동조합'의 법률적 형평성 문제와 관련된 타 법률 개정 논의도 부분적으로 다루었다. 예컨대,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농업 분야 협동조합'이 농업법인과 동등한 조세 감면 혜택을 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낙농진흥법」, 「인삼산업법」 등을 개정하여 '농업 분야 협동조합'이 농업회사법인의 일종으로 설립될 수 있게 하거나 각종 농정 영역에서 농업 생산자단체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⁷⁾ 그러나 이상의 논의가 '농업 분야 협동조합'과 여타의 법인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문제를 심층적으로 검토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문제에 본격적으로 접근한 연구로는 김기태·김연민·김원경·박주희·신동욱(2012)의 것이 유일한데, 농업법인 관련 법률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지는 않았다.⁸⁾

7) 강현철 외(2012: 89-99)를 참고.

8) 『농업분야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영향 및 제도 정비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김기태 외(2012)의 보고서는 광범위한 주제들을 다루었다. 그 가운데 법제 정비에 관해서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농업법인의 한 형태로 포함시키는 방안, 농업생산자단체로 지정하는 방안,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 사업 지침을 정비하는 방안, 「농업협동조합법」을 정비하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들이 기존의 농협들과 경합하지 않도록 방지하고 협력하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문제는, '농업 분야 협동조합'과 영농조합법인 사이의 형평성 문제에만 국한해서 살펴보다라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조치가 되지 못한다는 점에 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형평성 문제를 배태하고 있는 타 법률의 문제가 상당수 해소되기는 하지만, 그렇게 해소되지 않기에 병행 개정해야 할 법률들도 상당수 있다. 그것들을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농식품부의 정책 사업 추진 지침 개정을 논의하는 것은 위계적 구조를 충실히 따르는 법규의 논리에 비추어보면 불충분하다.

한편, 정부는 「협동조합기본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을 가축 분뇨 처리 사업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⁹⁾ 농산물품질관리 대상 생산자 단체의 범주에도 포함시키고,¹⁰⁾ 농업법인의 범주에도 포함시키고,¹¹⁾ 산

-
- 9)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는 “생산자단체’라 함은 축산업자를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조항에 의해 ‘생산자단체’로 규정된 단체가 가축분뇨 시료 채취 및 성분 분석 사업,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하게 되어 있는 ‘퇴비·액비 이용 촉진 계획’ 수립 과정, 퇴비·액비의 이용 및 유통을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구성되는 ‘퇴비·액비 유통협의체’ 등에 참여할 수 있다. 「협동조합기본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도 이 법률이 정의하고 있는 ‘생산자단체’의 범위 안에 포함시키겠다는 발표였다. 이 경우는 ‘농업 분야 협동조합’과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과 같은 ‘농업법인’ 사이의 형평성을 맞추는 것과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법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 10)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2호는 “생산자단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4호의 생산자단체와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4호에서는 다시 “생산자단체’란 농어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어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물론, 그 시행령(대통령령)을 찾아보아도 「협동조합기본법」에 의거해 설립된 협동조합은 포함되지 않는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품질을 향상하거나 표준 규격화 및 물류 표준화 등을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정부가 농어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에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동법 제110조 제1호, 제2호).
- 1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관련 조항에 관해서는 각주 6)을 참고. 동법 시행령에서는 영농조합법인의 설립, 사업, 정관, 해산, 준조합원의 자격, 생산자단체 가입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제9조~제15조). 관계 정부부처 합동회의의 문건에서는 「협동조합기본법」에 의거해 설립된 협동조합을 영농조합법인이 아니라 농업회사법인의 일종으로 인정할 수 있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05조, 제106조 등에 규정된 법인세·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지원 대상이 되게 하겠다는 표현이 등장한다. ‘농업 분야 협동조합’을 영농조합법인이 아니라 농업회사법인의 일종으로 간주할 수 있게 법률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영농조합법인이 ‘협업적 경영체’로서 ‘기업적 경영체’인 농업회사법인인과는 그 운영 원리를 달리하면서 협동조합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관계 당국이 간과하고, 영농조합법인이 기본적으로 상법상 법인이 아니고 농업회사법인이 상법상 법인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상법상 법인으로 기능하는 ‘농업 분야 협동조합’과 공통점이 있다는 측면만을 더 크게 고려한 결과인 듯하다.

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하겠다는¹²⁾ 법제 개선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기획재정부, 2012: 8-11). 그리고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된 지 2년,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앞에서 언급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 분야 협동조합’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려는 포괄적인 법제 개선은 커녕 2012년의 정부 발표도 실행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법제가 정비되지 않아 현실에서 불합리한 일들이 생겨나고 있다. 일례로, 근래에 농촌에서 협동조합법인 형태로 많이 설립되고 있는 농산물 생산·가공·판매 분야의 마을기업¹³⁾ 문제를 들 수 있다. 그 같은 협동조합법인-마을기업과 그 조합원들은 농업법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종래에 설립된 영농조합법인-마을기업 및 그 조합원들과 비교할 때 세제 또는 정책 면에서 불공평한 처우를 받게 되어 있다. 가령, 영

1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동법 제23조의2에 따른 국유림영림단 등이 아닌 자로서 산림사업을 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3) 마을기업은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이라고 정의되어 있다(안전행정부, 2014: 1). 안전행 정부는 여러 해 전부터 마을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로 보조금 등을 지원해 왔다. 『2014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서는 ‘지역주민 5인 이상이 출자하고 출자자 가운데 지역 주민 비율이 70% 이상이 되는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등 조직 형태가 법인인 단체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었으나 시행되기 전인 2012년에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의 시사점과 농업·농촌 정책의 과제』라는 연구의 일환으로 지역별 비례 표집한 조사 자료를 다시 집계해 본 결과, 조사에 응한 전국 농촌 지역의 마을기업 261개 가운데 약 42.1%인 110개가 영농조합법인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법인이 아닌 임의조직이 24.1%, 비영리사단법인이 16.9%, 주식회사가 13.8%, 공익법인이 1.5%, 유한회사 등 기타 법인이 1.5%의 비율로 분포하고 있었다. 당시에는 법인이 아니어도 마을기업 육성 사업 보조금이 지원되었던 것 같다. 당시 설문조사에서 마을기업 경영자들의 46.1%가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면 ‘사업 조직을 협동조합법인으로 전환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김정섭·마상진·김미복, 2012: 34-35). 2013년부터 새로 지정된 마을기업들 가운데 상당수가 협동조합법인이다.

농조합법인-마을기업의 농업인 조합원이 농지 또는 초지를 현물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만, 협동조합법인-마을기업의 농업인 조합원의 경우 그렇지 않다.¹⁴⁾ 폐교가 있는 농촌 마을에서 주민들이 영농조합법인-마을기업을 설립하고 폐교 재산을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려 할 때 시·도 교육감이 사용료를 감액해주거나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지만, 협동조합법인-마을기업의 경우 그렇지 않다.¹⁵⁾ 심지어, 영농조합법인-마을기업이 작물을 재배하려고 일반적인 영농 자재를 구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사후 환급받을 수 있으나, 협동조합법인-마을기업은 환급받을 수 없다.¹⁶⁾ 이처럼 법제가 미비한 탓에, “농업 분야에서 협동조합을 만들기보다 먼저 영농조합법인을 만든 후 추이를 보면서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김기태, 2013: 2)는 조언도 나온다. 협동조합법인과 영농조합법인 사이의 형평성 문제들이 여러 법률에 배태(胚胎)어 있는 이 상황은 현실에서 점점 더 자주 표면으로 떠오를 것이다. 그리고 관련 법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질 것이다.

이 글의 목적은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었지만 그에 상응하여 농업법인 관련 법제가 정비되지 않고 있는 탓에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큰 ‘농업 분야 협동조합’과 영농조합법인 간의 제도적 형평성 문제를 정리하고 법제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글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 분야 협동조합’과 영농조합법인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일별할 것이다. 두 법인 모두 동일하게 ‘농업 경영을 영위하는 넓은 의미의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법제상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전제이다. 그럼에도 현행 법규가 이 두 유형의 법인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14)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 참조.

15)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제3항 제3호 및 제5항 제2호 참조.

16)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제1항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제2호 참조.

부분도 살펴본다. 아울러, 농업법인의 또 다른 유형인 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다.¹⁷⁾ 둘째, 현재의 농업법인 관련 법률들이 ‘농업 분야 협동조합’의 출현을 고려하지 않았기에 노정된 형평성 문제들을 제시할 것이다. 크게 보아 ‘농지 소유 및 이용’, ‘조세 감면’, ‘지원 정책 및 규제 특례’의 측면에서 제기할 수 있는 법제상 형평성 문제를 논할 것이다. 그 같은 논의에서 드러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제 개선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광범위한 분야에서 문제가 제기되므로 관련된 법률들도 그 수가 아주 많고 상호 인용·참조하는 방식으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농업법인을 정의하고 있는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만을 개정하는 것으로는 충분할 수 없다. 함께 개정해야 할 법률들을 낱알이 살펴보면서 법제 개선 방향을 제안하려 한다. 끝으로, 논의를 요약하고 이 글의 한계를 돌아보며 향후의 연구 과제를 제안하면서 글을 맺을 것이다.

2. 영농조합법인과 ‘농업 분야 협동조합’의 유사점과 차이점

영농조합법인이 제도화된 것은 1990년이였다. 같은 해 4월 7일 제정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 제1항은 “농민은 농업경영의 합리화로 농업 생산성의 향상과 농가소득의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로써 우리 농업사에서 처음으로 농업법인이 탄생한 셈이다(김정호·박문호, 1994: 2). 김정호·박문호(1994)는

17) 이 글에서 또 다른 유형의 농업법인인 농업회사법인은 제외하고 영농조합법인과 ‘농업 분야 협동조합’을 비교하며 형평성 문제를 논의하는 까닭이, 그 대목에서 드러날 것이다.

영농조합법인 제도가 1960년대부터 논의되고 실천된 농업 부문의 협업 경영에 법적 지위를 부여한 사건이라고 의의를 두었다. 그럼에도 당시에 이미 '협업경영이 영농자산의 공동소유를 근간으로 성립되어야 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인데, 대부분의 영농조합법인이 농지 등 조합원의 출자 규모는 극히 저조하고 오히려 정책 보조사업에 의존하여 자본금을 늘리고 있다'(김정호·박문호, 1994: 84-85)는 비판을 하고 있다. 지금에야 영농조합법인이 협업적 농업경영을 영위하는 조직이라는 문구는 법률 한 구석에 남아 있는 것으로 '협업'이라는 말의 의미가 퇴색한 감이 있지만, 1990년대 초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영농조합법인 제도가 도입될 때 '협업'의 개념은 상당한 무게의 역사적 기원을 갖는 것이었다.

우리나라에서 농업의 협업(공동)경영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1962년 12월에 당시 농림부가 주도한 농업구조개선심의회에서 자립경영 육성의 일환으로 협업농을 제시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당시 농림부)는 한정된 범위이기는 하지만 시범적으로 전국의 5개 지구에 협업농장을 구상하게 되었고, 1963년 3월에 5개 지역에 협업농장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이 사업의 주목적은 국내 식민과 산지 개발(개간)로서, 사업지구는 경기도 광주군의 광주협업개척농장, 전북 진안군의 운장산협업개척농장, 전남 광양군의 백운산협업개척농장, 경북 월성구의 박달군협업개척농장, 경남 양산군의 대리협업개척농장 등이었다. 또한 정부의 시범사업을 계기로 민간 주도의 협업농장이 농민운동적 차원으로 전국 여러 지역에서 추진된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위의 개척농장을 비롯하여 모두 협업농의 이상을 추구했을 뿐 결국은 실패로 끝나고, 유일하게 오늘날까지 명맥을 유지하는 곳은 증평협업농장(1969년 3월 25일 「증평협업 이상촌」으로 시작, 1991년 7월 23일 영농조합법인 등기) 한 곳 뿐인 것으로 파악된다.

- 김정호·박문호(1994: 21).

김정호·박문호(1994)는 1960년대의 협업농장이 정부의 시범사업에서 비롯되어 농민운동 차원으로까지 확산되었다고 서술하고 있으나, 오히려 그 반대였을 가능성이 높다. 김영미(2009)는 이 같은 협업농장의 기원을 일제 강점기부터 시작된 일종의 ‘이상촌 운동’으로부터 찾고 있다. 그 ‘이상촌 운동’의 실천 수단으로 상정된 조직 모형은 바로 협동조합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상촌 건설운동은 1930년대에 다양한 사회 세력에 의해 활발하게 전개된 적이 있었다. 총독부의 모범부락 조성사업, 기독교세력의 예수촌 건설운동, 천도교의 자주촌 건설운동, 이종만·허헌 등 진보적 민족주의자들이 중심인물로 활약했던 대동농촌사의 집단농촌건설운동 등이 바로 그것이다. 태평양전쟁 등으로 인해 사그라졌던 이 이상촌 건설운동은 1950년대 중반부터 다시 활발하게 시도되었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1930년대 예수촌 건설운동을 주도한 배민수를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 사회운동세력에 의해 다시 주도되었다. 기독교 세력이 구상한 모범 농촌은 교회·학교·의료소·협동조합·목욕탕·이발소·세탁소·탁아소 등 각종 공동시설을 갖춘 마을, 그리고 이러한 공동시설을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곳이었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민의 이익을 위한 각종 생산장려운동 및 협동조합운동, 그리고 농촌문화 향상과 농촌 교화를 위한 생활개선운동과 복음운동이 제시되었다. 그런데 이재영의 구술에 의하면, 1950년대에는 자그마한 협업농장을 실험적으로 운영하는 청년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한다. 백운산협업농장, 화남협업농장 등 전국적으로 협업농장들이 실험적으로 운영되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모샤브(moshav)나 키부츠(kibbutz) 같은 것을 어떻게 우리나라에 적용할 것인가 하는 고민 속에서 소규모의 실험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재영은 모델을 보고 배우기 위해 여러 곳의 협업농장을 방문했다. (중략) 요컨대 정치권에서의 협동조합 논의는 비록 이승만 정권에 의해 지연·왜곡되었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농촌 문제와 협동조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고양되어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순수

한 열정을 가진 청년들이 농촌운동가를 자임하면서 농촌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었다. 애향청년회를 조직한 이재영은 농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영농법과 협동조합 등을 통해 농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던 그러한 농촌운동가들 중의 한 사람이었다.

- 김영미(2009: 291-294).

일제 강점기부터 시작된 농촌에서의 협동조합 운동이 한국전쟁 이후 남한 농촌에서의 ‘협업농장’ 운동 또는 시범사업과 연결되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1970년대 들어 협업농장 논의는 단절되다시피했지만, ‘협업을 위한 농가의 조직화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김정호·박문호, 1994: 22). 그것이 기반이 되었던 것일까? 1990년에 드디어 ‘협업적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법인으로서의 영농조합법인이 출현하였다. 이때의 ‘농업법인제도는 영세농의 협업을 전제로 한 것으로, 영농조합법인은 농업경영이 중심이 되는 농업생산법인으로 제도화된 것’(김수석, 2007: 110)이었다.¹⁸⁾ 영농조합법인의 역사적 기원이 결국 협동조합과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영농조합법인 제도가 도입되던 당시 ‘협업적 농업경영’의 개념은 상당히 엄격하게 정의된 것이었다. 따라서 “영농조합법인은 「민법」상의 조합을 모태로 하고 농업회사법인은 「상법」상의 회사 중 한 가지 형태를 택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적 차이점은 당초에 영농조합법인이 협업적 농업경영체를 지향하고 농업회사법인이 기업적 농업경영체를

18) 그래서 “초기의 영농조합법인은 그 구성원을 1ha 미만의 농지소유자로 제한하였고, 위탁영농회사는 농가로부터 위탁받을 수 있는 사업크기를 농가 1호당 3ha 이내로 제한하였다. 한마디로 초기에 설계된 농업법인제도는 영세농의 협업을 전제로 한 것으로 대규모 기업적 경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는 1993년의 제도 개편에서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농지상한과 위탁영농회사의 위탁상한을 폐지함으로써 부분적인 수정이 이루어졌다(김수석, 2007: 110).”

지향한 것에 유래한다(김수석, 2007: 112-113).” 흔히, 그렇기 때문에 영농조합법인은 무한책임회사이고 농업회사법인은 유한책임회사라는 식의 설명도 있지만, 정확한 설명은 아니다.¹⁹⁾ 농업회사법인이 취할 수 있는 회사의 형태로는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합명회사는 무한책임회사이며 합자회사에도 무한책임사원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무한책임인가 유한책임인가 하는 문제 외에도 잘 살펴보아야 할 차이점은 공동자산의 소유 형태에 관한 법률적 규정의 차이점이다. 농업회사법인은 해당 사단법인이 자산을 단독 소유하는 것임에 비해 「민법」상의 조합인 영농조합법인은 ‘합유’라는 형식을 취한다는 점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민법」에서 공동소유 형태에는 ‘공유(共有)’, ‘합유(合有)’, ‘총유(總有)’의 세 형식이 있다. 합유의 경우 공동재산 가운데 조합원 개인의 지분을 처분하는 데 있어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며 분할청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어떤 의미에서 영농조합법인이 「민법」상 조합으로서의 성격을 갖게 된 것은 법률적 지위가 아예 없는 마을 공동체(예: 대동회)나 공동생산조직을 ‘권리능력이 있는 주체로 현대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협동조합기본법」상의 협동조합 법인들이 「상법」상의 법인이라는 점과 비교한다면, 영농조합법인을 규율하는 「민법」상의 조합 규정이 경제조직을 규율하기에 미약(김수석, 2007: 113)한 것도 사실이다.

정리하자면, 영농조합법인과 ‘농업 분야 협동조합’은 협업적 농업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그 기원을 같이 한다. 그러나 서로 다른 경로를 거쳐 제도화된 결과물로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갖는다. 그런 점에서 ‘협업’이라는 개념 없이 출발한 농업회사법인은 그 둘과는 성격이 매우 다르다.

19) 그럼에도, 영농조합법인이 무한책임회사라는 점이 경영활동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은 여러 곳에서 나온다. 예컨대 인수합병이 용이하지 않거나 청산이 어렵다는 등의 주장들이 있다.

「협동조합기본법」상의 일반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특징들을 비교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일반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특징 비교

구분	일반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근거법령	「협동조합기본법」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설립 목적	구성원의 복리 증진과 상부상조, 조합원 등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수요에 부응	협업적 농업경영	기업적 농업경영
설립 자격	제한 없음	농업인, 농산물 생산자단체	농업인, 농산물 생산자단체
발기인 수와 출자자 책임	5인 이상의 조합원(유한책임)	5인 이상의 조합원(무한책임)	합자회사(유한·무한 각 1인 이상), 합명회사(무한책임 사원 2인 이상), 유한회사(2~50인, 유한책임), 주식회사(3인 이상, 유한책임)
준조합원	준조합원제도 없음	조합법인에 생산자재 공급, 생산기술 제공자, 조합법인에 농지 임대, 경영위탁자, 조합법인 농산물의 대량 구입·유통·가공·수출하는 자. 의결권 없음.	비농업인도 의결권 인정
출자한도	현금, 기타 현물 출자 조합원 1인당: 총 출자좌 수의 30% 이내	농지, 현금, 기타 현물 출자, 조합원 1인당: 무제한, 준조합원 출자한도: 무제한	농지, 현금, 기타 현물 출자, 비농업인: 총출자액의 90% 이하 (총출자액 80억 원 이하인 경우)
의결권	1인 1표제	1인 1표제	출자 1구좌당 또는 1주당 1표

사업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농업 관련 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 농산물의 공동 출하·가공·수출, 농작업 대행, 기타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농업경영,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농작업 대행, 부대사업 (영농자재 생산·공급, 종자생산, 종균배양, 농산물 구매·비축, 농기계 기타 장비의 임대·수리·보관,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관리)
농지 소유	불가	가능	가능(업무집행권자의 1/3 이상이 농업인인 경우)
타법 준용	상법 중 유한책임 회사에 관한 규정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 상법 제176조 준용(법인의 해산명령)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 상법 제176조 준용(법인의 해산명령)
가입 가능 농림업 생산자단체	없음	농협, 산림조합, 연연초생 산협동조합	농협, 산림조합, 연연초생 산협동조합

주: 「협동조합기본법」을 참고하고, 농업법인에 관해서는 김수석(2007: 112)의 내용을 수정한 것이다.

3. 영농조합법인과 ‘농업 분야 협동조합’, 형평성 및 법률 개정의 문제

상당수의 영농조합법인들이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법인으로 전환할 의향이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²⁰⁾ 물론, 그 가운데에는 정부의 협동조합 정책과 결부되어 보조금 등의 지원 시책이 있을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된 것들도 있겠지만,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직후의 상황에서 보면 기존의 영농조합법인이 협업적 농업경영 조직으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 내지는 반성으로부터 협동조합으로 전환하

20) 각주 13)을 참고.

려는 의향을 갖게 된 이들도 상당수 있는 것 같다.²¹⁾ 그런데 현행 법제 하에서는 농업인들이 협업적으로 농업을 영위하려고 『협동조합기본법』을 따라 협동조합법인을 설립하더라도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농업법인의 지위를 얻지 못한다. 그래서 발생하는(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문제들이 여럿 있는데, 대략 ‘농지 소유 및 이용에 관한 것’, ‘조세감면 혜택에 관한 것’, ‘여타의 지원 정책이나 규제에 관한 것’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3.1. 농지 소유 및 이용에 있어 영농조합법인과 ‘농업 분야 협동조합’의 형평성 문제

『농지법』에 따르면 몇 가지 예외를 빼고 나면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아니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기’(동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 때문이다. 이때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하는데(동법 제2조 제4호), 『농지법』에서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

21) 김기태 외(2012: 58-59)의 연구에 그러한 인식의 일단을 엿볼 수 있는 자료가 있다. 그 연구에서는 농업 분야의 협동조합을 설립한 이들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을 수행하고 그 자료를 일부 인용하고 있는데, 질문 항목 가운데에는 사업 조직의 법인 형식으로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을 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이 포함되어 있었다. 여러 종류의 답변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협동조합의 가치에 동의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자들의 의견이 있어 눈길을 끈다. 면담 자료 몇 개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협동조합의 가치에 동의하고, 협동적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협동조합을 선택했다. 앞으로의 정부정책도 교육과 컨설팅 위주로 된다고 한다. 정부의 지원을 바라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자립해서 사업할 수 있는 협동조합의 형태가 우리에게 더 적합하다고 생각했다.” “농업법인에 비해 협동조합이 세제혜택이 없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1인1표라던가 지분에 상관없이 사람 중심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점에 협동조합을 선택했다. 영농조합법인도 1인1표이기는 하지만 지분에 따라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의된 영농조합법인과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²²⁾

‘농업 분야 협동조합’이 농업법인으로 간주되지 않음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음을 뜻한다. 따라서 농지 소유에 관련된 여러 법령이나 정부 정책의 대상이 될 기회가 원칙적으로 차단된다. ‘농지 소유 세분화 방지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농지의 일괄적 상속·증여 또는 양도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²³⁾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수하도록 청구’²⁴⁾할 수도 없다. 「농지법」 제15조에서는 농지이용증진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데,²⁵⁾ 농업인들이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하더라도 농업법인으로 간주되지 않는 한 농지이용증진사업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 밖에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9조 제3항은 농지 장기임대차사업의 일환으로 전업하거나 은퇴하려는 농업인의 농지를 임차하여 전업농 육성 대상자 또는 농업법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농업 분야 협동조합’은 농업법인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대상이 될 수 없다.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간척지 활용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임대하려는 경우, ‘해당 매립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으로 구성된 농업법인에 대하여 우선 임대할 수 있다.’(동법 제22조

2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를 참고.

23) 「농지법」 제22조 제1항을 참고.

24) 「농지법」 제33조 제2항을 참고.

25) 「농지법」 제15조는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실례를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1. 농지의 매매·교환·분합 등에 의한 농지 소유권 이전을 촉진하는 사업, 2. 농지의 장기 임대차, 장기 사용대차에 따른 농지 임차권 설정을 촉진하는 사업, 3. 위탁경영을 촉진하는 사업, 4.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농지를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집단으로 이용하여 농업경영을 개선하는 농업 경영체 육성사업.”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매립사업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이 법인을 구성하여 간척지를 임차하려고 할 때에는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해야 하지 협동조합을 설립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농지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농업 분야 협동조합’의 농지 소유 및 이용에 관하여 법률적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들을 살펴보았다. 그 외에도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 자산 취득과 관련하여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을 특별히 배려하는 법률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농업 분야 협동조합’이 농업법인으로 간주되지 않아 그 적용을 받지 못하는 법률들이 여럿 있다.²⁶⁾

3.2. 조세 감면에 있어 영농조합법인과 ‘농업 분야 협동조합’의 형평성 문제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농업과 관련된 조세감면제도는 약 30개 이상이다(김미복·김수석, 2011: 14). 그 가운데 영농조합법인과 관련하여 법인이나 관련자가 납부해야 할 조세 가운데 감면 대상이 되어 있는 것들을 살펴본다.

26) 가령, 「농어촌정비법」 제100조 제2항과 제3항에서는 한계농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토지를 개발하여 매도할 때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의 전업농 육성 대상자 및 농업법인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에게 사용료를 감액하여 대부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제5조 제3항), 5년 이상 활용되지 않은 폐교재산을 대부 또는 매수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 해당 지역의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에게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조 제5항).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특수입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은 민주화운동, 국가 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특수입무유공자 등과 그 유족에게 국가보훈처장이 농토구입자금을 대부한 후 저당권이 실행되어 그 담보재산을 매수할 경우, 매수재산이 농지이면 「농지법」에 따른 농업법인이나 농업법인에 매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영농조합법인과 관련하여 식량작물재배업으로 발생한 소득분에 대한 법인세, 식량작물재배업으로 발생한 소득 가운데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조합원의 소득세, 영농조합법인에 농지 또는 초지를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대하여 감면 규정을 두고 있다.²⁷⁾ 그리고 제69조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이가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농업법인에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71조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지, 초지,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직접 경작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하는 조항도 두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도 그것과 유사하게 조세 감면 규정을 두고 있다. 농협 등이 농업법인에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제10조), 농업법인이 영농 목적으로 법인 설립 등기일로부터 2년 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농업법인 설립 등기 관련 등록면허세(제11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을 농업법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 등기 및 임차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제13조),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중 일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제126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농업법인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제129조) 등에 대해 면제 또는 감면을 규정하고 있다. 주로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조세 감면 조치가 규정되어 있다.

27)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를 참고.

3.3. 각종 지원 정책 및 규제에 있어 영농조합법인과 '농업 분야 협동조합'의 형평성 문제

농지 소유나 조세 감면 외에도, 정부가 추진하는 영농조합법인 등의 농업법인에 대한 각종 지원 정책이나 규제 특례 조치에 있어서도 '농업 분야 협동조합'은 그 대상이 되지 못한다. 실질적 의미에서 형평성이 크게 문제될 것이다. 농업법인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의 대강은 여러 법률에서 반복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특히, 국가 농업·농촌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 대상을 전반적으로 규정하는 기본법²⁸⁾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인데, 이 법률에서 농업경영체 또는 농업법인 지원 정책 관련 조항은 여타의 농업 관련 법률, 시행령, 정책사업 시행지침 등에서 주요한 법적 근거로 인용되는 것들로 농업경영체 및 농업법인 지원 정책의 근거를 다각도로 마련해 둔 것이다.

농업법인을 육성하는 것 자체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으며(「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8조), 농업법인을 포함한 농업경영체의 경영안정이나 농어업의 구조개선에 필요한 여러 지원 사항을 열거하고 있다(동법 제29조). 한편, 농업법인 자체를 육성하려는 목적은 아니지만 농수산물과 식품 수급 및 가격 안정, 유통개선, 농업 부문의 해외 투자, 농수산물 식품 수출 진흥에 필요한 정책 등을 수행하려 할 때 그 일환으로 농업법인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해두고 있다(동법 제42조, 제43조, 제58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포괄된 규정을 인용하여 여러

28) "기본법이란, 특정 행정영역에서의 국가행정상 기본적 이념·정책·방침을 밝히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을 말하며, 관계법령에 대해서 일정한 지도성 및 방향성을 가지지만, 반드시 기본법이라는 이름을 가지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상위개념을 가지지 않는 법률로서, 법제실무적인 개념으로 사용되는 용어이다(강현철 외, 2012: 62)."

법률들이 영농조합법인 등의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한 것 몇 개만을 살펴본다.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4조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농업인과 마찬가지로 ‘농업인 등’이라는 범주에 포함시켜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까지 살펴본 것들과 마찬가지로, 농업생산 활동을 수행하는 영농조합법인이 농업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동일한 내용의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농업 분야 협동조합’은 그렇지 않다.

한편,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책무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되어 있다. 이 법률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를 설치하고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제7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농업법인이 생산한 제품의 품질 및 안전 관리를 위해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제8조), 여러 종류의 인가 및 허가 관련 의제를 허용하고 있으며(제11조), 농업법인이 생산한 농외소득 활동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하도록 촉진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15조). 이러한 조문들을 그대로 따르면, 어느 농촌 지역의 영농조합법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하여 상품으로 만들어 판매하려 할 때 앞에 열거한 조문에 따라 공공 부문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지만, 농업인들이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동일한 농외소득 활동을 펼치더라도 이 법률에 의한 지원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밖에도 농업법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정책 지원 또는 규제 특례 조항을 담고 있어서 현 상태에서는 ‘농업 분야 협동조합’이 해당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없게 규정된 법률들이 여럿 있다.²⁹⁾ 법률보다 하위 수

29)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식물방역법』,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주세법』,

준인 시행령에서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이나 특례를 규정하고 있어 '농업 분야 협동조합'과 농업법인 사이의 형평성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들도 상당수 있다. 그것보다 더 하위 수준의 규정인 농림사업시행지침에는 보조 또는 융자 지원 정책 사업의 대상이 농업법인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질적 효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³⁰⁾

3.4. 형평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 방향

영농조합법인은 법률에 의해 국가 농정의 주요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조직이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서 농업·농촌 정책의 대상은 대략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의 세 범주로 규정된다(동법 제3조 제2호, 제3호, 제4호). 농업경영체에 대해서는 그 구체적인 규정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위임하고 있다. 이 글에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법인과 비견하여 형평성 문제를 논하려 하는 영농조합법인은 바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농업경영체로서 농업법인의 일종이다.³¹⁾ 어떤 '농업 분야 협동조합' 법인이 협업적 농업경영을 할 경우 국가나 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어업인 부채 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업협동조합법」, 「소금산업 진흥법」,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등이다.

30) 김기태 외(2012: 152-155)는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수록된 정책 사업들 가운데 협동조합을 사업 대상자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 정책 사업 49개를 적시한 바 있다. 그것들 가운데 상당수가 '농업 분야 협동조합'을 농업법인의 일종으로 간주할 수 있게 하는 법제 정비만으로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다.

31) 농업경영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고 시행하는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의 대상으로 규정된다(「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농업경영체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구분되는데(동법 제2조 제3호), 농업법인은 다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으로 나뉜다(동법, 제2조 제2호).

방자치단체가 영농조합법인과 동등하게 정책적으로 배려하는 것이 형평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8조에서는 영농조합법인만을 협업적 농업경영의 법인 주체로 보고 있으므로, 이 조항에 '농업 분야 협동조합' 법인을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마찬가지로 농업경영체의 경영안정과 구조개선을 위한 지원 대상으로도(「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9조), 융자 및 보조금 지원 대상에 부과되는 의무인 농업경영체 경영정보 등록의 대상으로도(동법 제40조), 농식품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목표로 하는 정책 지원의 대상으로도(동법 제42조), 농식품 생산·유통·판매 등을 조직적·체계적으로 수행하려는 공동 브랜드화 정책의 대상으로도(동법 제43조) '농업 분야 협동조합' 법인을 포함시키는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영농조합법인을 포함한 농업법인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러 종류의 정책 대상으로 영농조합법인을 지목하고 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농업법인을 포함한 농업경영체에 대해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금 지급을 허용하고 있으며(동법 제12조), 여러 종류의 지원 정책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동법 제20조 제1항).³²⁾ 게다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정의(定義) 조항을 인용하여 농업법인을 특정 정책의 대상(또는 참여자)로 한정하는 법률들이 많다.

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농업 분야 협동조합' 법인을 농업법인의 일종으로 간주할 수 있게 법률을 개정하면, 여러 법규와 정책 사업 지침에서 형평성 문제가 어느 정도까지는 자동적으로 완화될 수 있음을 뜻한다. 국회정보시스템³³⁾의 법률지식정보 데이터베이스

3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기술개발, 경영규모의 확대 또는 농어업기계화 및 시설장비 현대화, 경영정보화, 전문인력의 확보 및 인수합병 등을 위하여 자금 및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스에서 검색한 결과, ‘농어업경영체’, ‘농업경영체’, ‘농업법인’, ‘농어업법인’ 등의 단어가 본문에 포함되어 있는 법률이 19건이었다.³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조문을 개정하면, 이 법률들에서는 자동적으로 해당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기존의 농업법인과 동등한 처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물론, 법률에 따라서는 조문에서 ‘농어업경영체’, ‘농업경영체’, ‘농업법인’ 등의 용어를 인용하지 않고 ‘영농조합법인’이라는 용어를 인용하고 있어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를 개정하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것들도 많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함께 개정해야 할 법률들이다.³⁵⁾

이렇게 많은 법률들을 ‘기계적으로’ 개정한다고 해서 형평성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영농조합법인의 구성원이 모두 농업인이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어서,³⁶⁾ 「협동조합기본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농업 분야 협동조합’ 법인의 조합원들이 모두 농업인이 아닌 경우라면 앞 절에서 논의했던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 분야 협동조합 모두 협업적 농업경영을 추구하며 민주적 의사결정

33) www.assembly.go.kr

34) 그러한 법률과 해당 조항 번호를 <부록 1>에 실는다. 이것은 법률 수준에서 파악한 것이다. 그 하위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까지 검토하면 그 수는 더 많아질 것이다.

35) 이러한 법률 조문들은 대체로 “이 법에서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을 말한다.”라는 식의 문장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농업 분야 협동조합’을 새로운 유형의 농업법인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만들고, 해당 법률도 최소한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조에 따른 △△협동조합법인을 말한다.”라는 식으로 고치는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 이처럼 ‘병행 개정’이 필요한 법률과 해당 조항 번호를 <부록 2>에 실는다. 이것 역시 법률 수준에서 파악한 것으로, 하위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까지 검토하면 그 수는 더 많아질 것이다.

36) 영농조합법인에서 조합원은 농업인이어야 하며, 농업인이 아닌 경우 조합원이 될 수 없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준조합원이 될 수는 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참고.

원리를 채택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는 전제를 온전하게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 그런 상태에서 '농업 분야 협동조합' 법인을 무조건 영농조합법인과 법률적으로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주장은, 다른 의미에서 역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예컨대, 농지 소유와 관련하여 이 문제를 살펴볼 수 있다. 「협동조합기본법」은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³⁷⁾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농산물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협동조합이라 하더라도 소비자가 조합원으로 참여할 길이 열려 있다. 실제로 현재 설립된 농촌 지역의 여러 협동조합들 가운데 농업인과 소비자가 함께 조합원이 되어 설립한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이 적지 않다. 이 경우에도 '농업 분야 협동조합'으로 인정하고, 따라서 농업법인의 한 유형으로 간주하고, 농지 소유를 허용해도 괜찮을까?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21조에 비추어 농업인이 아닌 자도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다. 다른 한편으로는, 「농지법」에서는 농업회사법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는데 농업회사법인에는 농업인이 아닌 자도 총출자액의 90% 이내 범위까지 출자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 상황에서,³⁸⁾ 농업인과 소비자가 함께 조합원인 '농업 분야 협동조합' 법인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

37)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은 상부상조의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둘 이상 유형의 조합원들이 모여 상호 배려하면서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조합원의 경영개선 및 생활향상에 이바지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합원의 유형으로는 △조합에 물품을 공급하는 생산자 조합원, △조합의 공급물품을 이용하는 소비자 조합원, △조합의 직원인 조합원 등이 있다. 소비협동조합이나 사업협동조합과 달리,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은 이질적 조합원의 구성을 특징으로 한다."(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센터, 2012: 48-49)

38)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농업인의 출자액 계가 총출자액의 90%를 넘을 수 없고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농업인의 출자액 합계 한도는 총출자액에서 8억 원을 제외한 금액이 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및 제19조를 참고.

은 실질적으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할 수도 있겠다.

이 문제에 대한 논쟁은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 같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쟁점은 제쳐두고 일단 시급하게 영농조합법인과 ‘농업 분야 협동조합’ 법인 사이의 형평성 문제를 완화하려면, 보수적인 관점이기는 하지만, 우선은 ‘농업 분야 협동조합’ 법인의 구성이 영농조합법인과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에서 앞서 언급한 법률 개정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그것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법인이라 하더라도 농업법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농업 분야 협동조합’임을 입증하는, 즉 영농조합법인처럼 조합원들이 모두 농업인임을 입증하는 절차를 별도로 만들어야 함을 뜻한다. 현재 영농조합법인이 농업인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입증하는 절차는 법인 설립 시 정관에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을 포함 기재하도록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³⁹⁾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법인 설립 절차 규정에는 ‘농업’에 관해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적어도 영농조합법인의 법인 설립 절차에서 조합원이 농업인임을 입증하게끔 하는 상기의 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등에서 별도로 마련하는 작업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농업 분야 협동조합’이 법인 설립 등기를 할 때 농업인 조합원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입증하게 하는 절차를 따르게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협동조합기본법」이 ‘농업 분야 협동조합’을 별도의 범주로 두어 설립 절차 규정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39)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를 참고.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시 제2013-17호에서 영농조합법인 정관(예)를 제시하고 있다. 이것에 따르면,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자격은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거나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어야 하며(제8조), 영농조합법인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려 할 때에는 경영규모 또는 연중 농업 종사일 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가입신청서를 영농조합법인에 제출해야 한다(제10조).

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 등록⁴⁰⁾ 시에 그런 입증 절차를 따르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한 방법이다.

4. 결 론

지금 농촌 지역에서 설립되고 있는 협동조합들의 사업 분야는 다양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농산물 생산·가공·판매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농업 분야 협동조합’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그런 사업 활동을 협업적으로(협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인 형식으로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영농조합법인이 이미 규정되어 있다. 영농조합법인은 농업법인의 일종으로서 아주 많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 지침 등에서 특정한 영역의 권리 주체로서 그리고 지원 정책 및 규제 특례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농촌 지역에서 활발하게 설립되고 있는 협동조합들과 관련하여 개선해야 할 제도는 광범위하겠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조직 측면에서 ‘농업 분야 협동조합’과 닮은꼴이고 그 활동도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영농조합법인과는 형평성이라는 관점에서 법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농업법인으로 간주되는 영농조합법인이 농업법인으로 간주되지 않는 ‘농업 분야 협동조합’에 비해 갖는 유리함을 여러 법률을 통틀어서 세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할 권리가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각종 조세 감면 조치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셋째는

40) 농업법인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해야 관련된 용자·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않은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업법인이 등록한 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8조를 참고.

농업 및 농촌 정책의 주요 대상이라는 점이다. 세 측면에서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를, 우선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농업 분야 협동조합'을 영농조합법인과 마찬가지로 농업법인의 일종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다소 완화시킬 수 있다. 물론,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관련된 수십 개의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농업 분야 협동조합'과 그 닮은꼴인 영농조합법인 사이에 형평성 문제를 중심으로 법제 개선 방향을 논의하였다. 이것은 아주 제한된 범위의 논의로서 이 글의 한계이기도 하다.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을 계기로 농촌에서도 활발하게 설립되고 있는 협동조합과 관련하여 이 글에서 다룬 것 외에도 법제 개선 문제를 논의할 것이 많이 있다. 첫째, 이 글에서의 논의는 법률 수준에 국한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그 하위의 시행령, 시행규칙, 정부 부처의 행정지침 등에 대한 실무 차원에서의 검토와 개선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가, 특히 농촌 지역에서 협동조합의 기본 취지에서부터 설립 및 운영에 수반되는 행정적·실무적 지식에 관계된 것까지 포함하여, 널리 확산되지 않은 가운데 협동조합법인 설립 과정에서 설립자들이 겪는 어려움이 자주 지적된다. 협동조합 설립 절차 측면에서의 법제 개선에 대해서도 「협동조합기본법」과 그 시행령 등 하위 법규에 대한 연구와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 셋째, '농업 분야 협동조합'과 영농조합법인의 형평성 문제를 중심으로 법제 개정 필요성을 논하였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기존의 농업법인 제도 자체를 개선하는 문제와 결부되어 협동조합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농업법인 제도 개편에 있어 '한편으로는 기업농적 대규모 농업경영체를 육성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의 가족농 경영을 합리화하는 새로운 법인경영체(유한영농법인) 창설이 필요'(김수석, 2007: 125)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은 그것과 관련된 중대한 상황

적 변수일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농촌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협동조합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법제 정비에 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농업 분야 협동조합’ 외에도, 소비자 협동조합이 농촌 지역의 경제적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으며 협동조합 활동 그 자체가 농촌 지역의 자조적(自助的) 발전 역량을 증진할 것이기 때문이다.⁴¹⁾ 다만, 농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지원 정책과 관련된 법제 정비는 신중하고 사려깊게 논의해야 할 과제이다. 협동조합이 ‘자율과 독립’을 규제적 이념으로 삼는 조직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41) 이에 관한 소략한 논의로, 김정섭·김미복·마상진(2013: 12-20)을 참고.

〈부록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농업법인 정의 조항을 개정하면 ‘농업 분야 협동조합’ 법인의 형평성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관련 법률 조항 - ‘농어업경영체’, ‘농업경영체’, ‘농업법인’의 용어를 포함한 법률 조항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항.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제22조 제3항, 제23조 제3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1조 제2항.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농어촌정비법」 제100조 제1항, 제100조 제2항, 제100조 제3항.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0조 제2항, 제30조, 제33조 제1항 제3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3호, 제11조의2 제1항,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제39조 제1항, 제39조 제2항, 제39조 제3항, 제40조, 제42조 제2항, 제43조 제3항, 제58조, 제59조 제2항.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3 제1항.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농지법」, 제2조 제3호, 제2조 제4호, 제8조 제1항 제2호, 제9조 제3호, 제15조 제4호, 제16조 제2호, 제21조 제1항, 제21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33조 제2항, 제33조의2 제1항, 제50조 제2항, 제54조 제1항 제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2항.

「식물방역법」, 제35조 제1항 제2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 제5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8조 제4항.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2항, 제69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주세법』, 제3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항, 제11조 제2항, 제128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129조 제2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52조 제2항.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조 제5호, 제18조 제1항 제1호, 제18조 제1항 제2호, 제18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2항, 제18조 제3항, 제19조 제3항, 제24조의3 제1항.

〈부록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농업법인 및 영농조합법인 관련 조항을 개정함과 더불어 법 적용 대상으로 ‘농업 분야 협동조합’ 법인을 포함하도록 관련 조항도 개정해야 형평성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관련 법률 조항 - ‘영농조합법인’이라는 용어를 포함한 법률 조항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5조 제2항 제4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8조.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호.

「농어업채해대책법」, 제2조 제8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조 제2항 제3호.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2호.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호.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 제2항, 제112조의4 제1항.

「소금산업진흥법」, 제58조 제2항 제5호.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6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 제66조 제2항, 제66조 제3항, 제66조 제4항, 제66조 제7항, 제66조 제9항, 제71조 제1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호, 제126조 제1항, 제126조 제2항, 제126조 제5항, 제126조 제7항.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제3항 제3호, 제5조 제5항 제2호.

■ 참고 문헌 ■

- 강현철, 박광동, 차현숙, 김종천, & 류창호. (2012).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에 따른 법 체계 분석 연구*. 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 (2012).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안) 및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관계 정부부처 합동회의 자료.
- 김기태. (2013). 협동조합법이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인가(1). *시선집중 GS&J*, 제154호, GS&J 인스티튜트.
- 김기태, 김연민, 김원경, 박주희, & 신동욱. (2012). *농업분야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영향 및 제도 정비에 관한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 김미복 & 김수석. (2011). *농업부문 조세체계와 개선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수석. (2007). 농업법인의 실태와 제도 개선방안. *농촌경제*, 30(4), 105-126.
- 김영미. (2009). *그들의 새마을운동*. 푸른역사.
- 김정섭. (2013). 농촌 지역사회의 자율성과 협동조합: 홍동면 사례 연구. *농촌사회*, 23(2), 173-223.
- 김정섭 & 김미복. (2013). *농촌 지역의 협동조합 설립 동향과 제도 개선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정섭, 김미복 & 이상진. (2013).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및 시행의 시사점과 농촌 정책의 과제. *농촌지도와 개발*, 20(1), 1-40.
- 김정섭, 이상진 & 김미복. (2012).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의 시사점과 농업·농촌 정책의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정호 & 박문호. (1994). *영농조합법인의 실태와 육성방안: 농업법인제도의 재정립을 위한 접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센터. (2012). *협동조합 이해하기*.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센터.
- 안전행정부. (2014). 2014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안전행정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
- 국회. 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assembly.go.kr).
-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홈페이지(www.cooperatives.go.kr).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www.iros.go.kr).

Trends of Cooperatives Establishment in Rural Korea and Improvement of Legislation

Jeong-Seop Kim

Korean Rural Economic Institute, 117-3 Hoegi-Ro,
Dongdaemun-Gu, Seoul, 130-710, Republic of Korea

Abstract

In urban as well as rural areas, there is a vigorous movement to establish cooperatives which are based on the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Eight months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law, more than 600 cooperatives reported their articles of association to the competent Mayor/Governor in rural areas. Considering the population distribution in urban and rural areas, this is not a small number.

Though recently established rural cooperatives are acting throughout diverse business sectors, cooperatives in agricultural sector, which engage in agricultural production, processing and sales, occupy the largest portion of all the rural cooperatives. There are two types of juridical person that are allowed to engage in the agricultural production, processing and sales by the laws. They are Farm Association and Agricultural Business Corporation.

Now in rural Korea, farmers tend to establish cooperatives by the Framwork Act On Cooperatives which are in the same business sector with Farm Association or Agricultural Business Corporation. There are many needs to improve legislation regarding cooperatives. Above all, the laws about Farm Association and Agricultural Business Corporation are in urgent need of improvement for the emerging rural cooperatives to be treated fairly.

key words : Cooperative, Frame Act On Cooperatives, Legal Equity



Jeong-Seop Kim is a senior research fellow of Korean Rural Economic Institute, Seoul, South Korea. His research interests are primarily in the area of rural development policy, with an emphasis on endogenous development, social exclusion and rurality.

Address: (130-710) 117-3 Hoegi-Ro, Dongdaemun-Gu, Seoul, South Korea

e-mail) jskkjs@krei.re.kr, phone)82-2-3299-4252